

영국의 보육서비스 성과관리체계

Child Car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U.K

박소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1. 서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가족 형태와 기능이 변화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오늘날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최저 수준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OECD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¹⁾이 1.71명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개입은 날로 강조되고 있으며, 보육에 따르는 고비용 문제 해결 및 보육서비스 확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계기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보육재정의 확대

가 급속히 이루어져왔으며, 보육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보육정책이 전개되어 왔다. 특히 보육서비스는 단순한 돌봄 서비스의 차원을 넘어 아동의 평생 발달을 좌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9년 9월부터 보육재정지원 방식이 아이사랑카드제도로 새롭게 전환되면서,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보육재정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체계적인 보육서비스 성과관리 방안 모색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서비스 성과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성과관리제도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5~49세의 가임 여성이 평생동안 낳는 아이 수

2. 영국의 보육서비스 개요

전통적으로 영국은 보육서비스에 있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보육은 가족이 담당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인식이 강한 국가였다. 그러나 1997년 신노동당이 집권한 후, 보육서비스가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보육에 대한 공공투자가 확대되어 왔다²⁾. 영국 정부는 1998년 ‘국가아동보육전략(National Childcare Strategy)’을 수립하여 0~14세 아동에게 지속가능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목표로서 ‘New Opportunity Fund’를 통해 5년 안에 3~14세 아동을 위한 보육 시설을 865,000개소로 늘리고, 0~3세 영유아들에게는 Sure Start³⁾ 프로그램을 통해 최상의 보육과 교육 그리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 ‘아동보육 10개년 전략(10 Year Strategy for Childcare)’을 수립하여 Sure Start 아동센터의 부모접근성 및 선택권을 높이고, 모든 3,4세 아동에게는 시간제 조기교육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육서비스 제공 인력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국정부는 ‘Every Child Matters’⁴⁾라는 아동의 전

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공표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하였으며,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병원, 학교, 보육시설 등)의 협력을 통한 아동서비스 향상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동법(Children Act 2004)’ 제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지역의 리더십, 역동성, 주인의식 강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기대와 지방정부의 재량권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아동보육법(Childcare Act 2006)’은 지방정부에게 지역의 욕구조사 및 보육시설의 충분한 제공에 힘써야 할 책임을 명시하여,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여전히 공공과 민간이 혼합된 방식 및 민간 제공 방식의 보육서비스가 많다는 특징을 지닌다. 아동 연령별로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0세 아동의 경우 대부분 부모나 친척 등에 의해 비공식적 양육을 받고 있으며, 약 20%가량의 아동들만이 공식적인 보육서비스를 받으나, 이들 대부분이 민간 보육시설이나 보모(childminder)에 의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1세 아동의 경우, 30% 정도가 보모나 민간보육시설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놀이집단

2) 김송이(2007),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서비스 유형화와 접근성에 대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 영국의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와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의 아동 보육 프로젝트로,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빈곤·소외계층의 어린이들을 도와 인생의 ‘확실한 출발’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영국 내 모든 아동이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4) Every Child Matters는 영국 정부가 출생에서부터 19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동의 안녕(well-being)을 위해 모든 아동 관련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정책 아젠다로서, 아동이 처한 환경과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아동은 ①건강하고, ②안전하게 보호되며, ③즐겁게 꿈을 이루어가고, ④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며, ⑤경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laygroups)이나 단기보육(sessional care)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거의 없다. 반면, 2세 아동의 경우 약 30% 이상의 아동들이 놀이집단(playgroups)이나 기타 단기보육(sessional care)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 중 3분의 2는 교회나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며, 3분의 1은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다. 한편, 초등학교 입학연령(5세) 전인 3~4세 아동의 공보육 이용률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무료 예비교육이 시작되는 연령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⁵⁾. 3세 아동의 96%가량은 무료 예비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그 중 절반 가량은 민간 및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며, 4세 아동의 경우에는 98%가량이 무료 예비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러한 4세 예비교육은 보육학교, 보육학급 등을 통해 지방 정부가 70% 가량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영역의 무료 예비학교에서 약 20%, 지역 및 비영리기관에서 약 9% 가량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은 지방정부가 보육서비스 제공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는 제한적이며 많은 부분 민간부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영국의 보육서비스 재정 지원 방식

영국 정부는 1998년 ‘국가아동보육전략

(National Childcare Strategy)’을 수립한 이후, 보육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 양 측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왔다. 영국 정부의 공급자 재정지원은 주로 3~4세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특징을 지닌다. 공급자에 대한 대표적인 재정지원으로는 아동·청소년 및 가족보조금(Children, Young People and Families Grant, 이하 CYPF)이 있으며, 이는 Every Child Matters Agenda를 성취하기 위하여 지역의 민간 및 비영리 보육시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사업의 운영보조금으로, 5년간(2006~2011년) 250개 이상의 기관에 총 134백만 파운드 규모로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0~3세 아동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Sure Start 프로그램과 아동센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3~4세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는 1년에 38주 동안 최저 주 12.5시간을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회 보조금(New Opportunity Fund)을 통해 3~14세 아동을 위한 보육 시설을 늘리고,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방과 후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액공제(Child Tax Credit과 Working Tax Credit)와 아동급여(Child Benefit) 등의 형태로 이용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약 90% 가량이 받고 있는

5) 3~4세 아동에게는 주 5일 2.5시간의 예비교육이 연간 33주 시행되며(2006년 기준), 2006~2011년에는 아동·청소년 및 가족보조금(Children, Young People and Families Grant) 지원을 통해 연간 38주의 무료 예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데,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또한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는 주 16시간 이상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소득이 낮은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등록되거나 허가된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보육비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주당 175파운드를, 아동 2인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주당 300파운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급여(Child Benefit)는 1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이나 16세 이상의 아동이더라도 아동이 교육 과정 중에 있을 때 정부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첫째 아이의 경우(혹은 자녀가 1명인 경우) 주당 20파운드를, 둘째 이후에는 주당 13.20파운드를 지급받는다.

4. 영국의 보육서비스 성과관리 제도 현황

1) 보육서비스의 성과 기준

영국 정부는 아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저소득 가정 아동 및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모든 보육서비스 공급자들이 국가가 설정한 보육서비스 기준을 달성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영국은 80% 이상의 보육서비스가 민간 및 비영리영역(Private, Voluntary and

Independent, 이하 PVI)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정부는 비영리/민간 영역에서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핵심 기준을 마련하고 ‘영유아기 기본 단계(Early Year Foundation Stage, 이하 EYFS)’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다.

‘영유아기 기본 단계(EYFS)’에서 제시하는 0~5세 아동에 대한 국가 표준은 ① 독창적인 아동(A Unique Child), ② 긍정적 관계(Positive Relationships), ③ 지지적 환경(Enabling Environments), ④ 학습과 발달(Learning and Development)의 4가지 주요 원칙과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16가지 하위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표 1>과 같다.

한편, 영국 정부는 보육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의 서비스를 포괄적이고도 협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정책 아젠다 ‘Every Child Matters’를 통해서도 성과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보육서비스를 포함하는 포괄적 아동정책으로서 명시하고 있는 5대 성과영역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5가지 성과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들은 공공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 PSA), 국가지표모음(National Indicator Set, NI) 및 영유아기초발달단계사업(Early Years Foundation Stage Program, EYFS)에 명시된 지표 및 척도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영국 정부는 ① 부모와 보육서비스 제공자 지원, ② 아동의 조기 개입 및 효과적인 보호, ③ 지방과 국가 간의 책임 및 통합, ④ 인력 개선의 네 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1. EYFS에서 제시하는 0~5세 아동에 대한 국가 표준

| | |
|--|--|
| <p>개별 아동 존중 (A Unique Child)</p> | <p>1) 아동발달(Child development) :영유아는 유능한 학습자이며 발달은 환경과 유전적 요소의 복잡한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짐.</p> <p>2) 포괄적인 보육(Inclusive Practice) :아동은 인종이나 지역, 능력 등에 관계없이 공평히 대우받아야 하며, 부모는 아동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함.</p> <p>3) 안전한 보호(Keeping Safe)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뿐 아니라, 아동에게 장애물을 발견하게 하며 스스로 이를 알아서 처리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함.</p> <p>4) 건강과 안녕(Health and Well-being) :부모, 보육서비스 제공자, 아동이 함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안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양육하여야 함.</p> |
| <p>긍정적 관계 (Positive Relationships)</p> | <p>1) 상호 존중(Respecting Each Other) :감정을 이해하고, 아동의 친교를 지지하며, 부모와의 관계 및 특별한 상호 관계에서 친근하고 열린 관계를 마련하여야 함.</p> <p>2) 파트너로서의 부모(Parents as Partners) :부모는 아동 보육과정에 매우 중요하며 참여를 환영받아야 함.</p> <p>3) 지지적 교육(Supporting Learning) :아동과 부모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촉진시키며, 아동의 학습을 돕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해야 함.</p> <p>4) 주요 인물(Key Person) :건고한 애착, 보호, 독립성 측면에서 아동과 가족 간의 지지적이고 친근한 관계 형성을 위한 역할이 필요함.</p> |
| <p>지지적 환경 (Enabling Environments)</p> | <p>1) 관찰, 평가, 계획(Observation, Assessment and Planning) :관찰과 관찰을 통한 평가를 통해 아동에 대한 계획 설정이 이루어져야 함.</p> <p>2) 모든 아동에 대한 지지(Supporting Every Child) :아동의 개별적인 학습 과정을 이해하고, 다른 전문가 및 부모와 함께 아동의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요를 충족시켜야 함.</p> <p>3) 학습환경(The Learning Environment) :실내외 학습 환경 및 정서적 학습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함.</p> <p>4) 다양한 학습(The Wider Context) :변화와 지속성, 커뮤니티 접촉,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학습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p> |

〈표 1〉 계속

| | |
|---|---|
| 학습과 발달 (Learning and Development) | 1) 놀이와 탐색(Play and Exploration) :경험을 통한 학습, 성인 참여, 야외 및 실내 놀이에 많은 시공간 할애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시간제약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학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함. 2) 활동적인 학습(Active Learning) :감정적·육체적으로, 사회적·정서적으로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이끌어야 함. 3) 창조성 및 비판적 사고(Creativity and Critical Thinking)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지지하고 이해하며,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 사고체계를 형성시키 나가도록 이끌어야 함. 4) 학습과 발달 영역(Areas of Learning and Development) :6가지 영역(개인적·사회적·정서적 발달, 의사소통·언어·독해, 문제해결·추론·수리,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 육체적 발달, 창조적 발달)에 기반하여 조화로운 발달을 이끌어야 함. |
|---|---|

자료: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그림 1. 영국 Every Child Matters의 5대 성과영역



두고 있으며, 보육서비스 제공기관(보모 포함)에 대해 교육 및 아동서비스 기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OfSTED)에서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먼저, 성과관리 대상으로 5세 이하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앞서 살펴본 EYFS의 보육서비스 국가 표준을

2) 보육서비스 성과평가 및 관리·감독

영국 정부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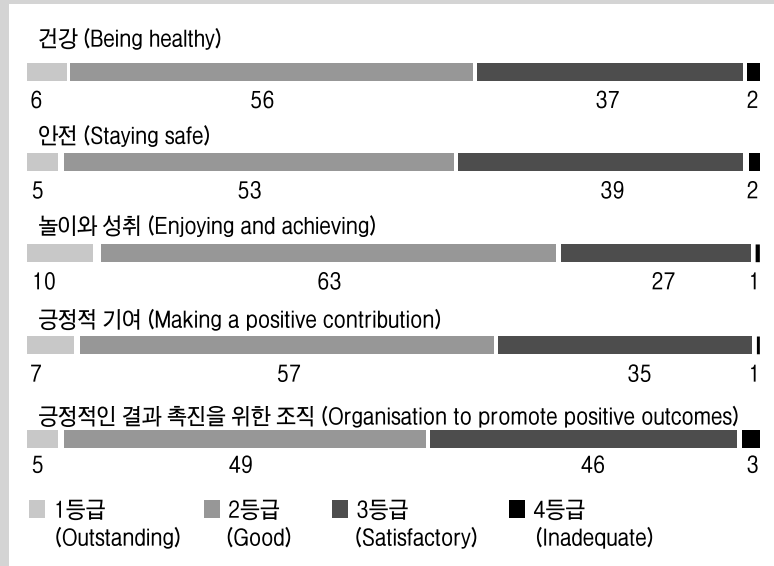
준수하고, 교육 및 아동서비스 기준청(OfSTED)의 영유아등록(Early Years Register, EYR)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5~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은 교육 및 아동서비스 기준청

(OfSTED)의 일반아동보육 기관등록(General Childcare Register)에 참여해야 한다. 성과관리 대상에 등록된 보육시설 및 보모(childminder)들은 교육 및 아동서비스 기준청(OfSTED)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교육 및 아동서비스 기준청(OfSTED)의 관리·감독에 따른 모든 평가 결과는 학부모에게 보고되고 전국적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게시되며, 재무부는 전년도 규제 및 감사를 바탕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품질과 표준에 대하여 국회에 연간보고서를 제출한다.

교육 및 아동서비스 기준청(OfSTED)의 평가는 개별 평가지표에 대하여 전체 4등급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1등급(Outstanding), 2등급(Good), 3등급(Satisfactory)의 경우 최소 3년간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4등급_1(Inadequate, category 1) 평가를 받은 경우, 보완 사항을 시정할 목표시점과 조치 사항이 전달되며, 공급자는 요구사항의 이행을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해당기관에 대해 평가자들은 평가대상을 불시에 방문할 수 있으며, 권고사항이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영유아등록

(Early Years Register, EYR)을 보유하거나 취소하는 등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12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4등급_2(Inadequate, category 2) 평가를 받은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한 즉각적인 강제적 조치를 취하게 되며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영유아등록(Early Years Register, EYR)을 보유 또는 취소할 수 있고 고소가 가능하다. 4등급_2(Inadequate, category 2)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 평가자들은 최소 3달에 1회 방문하게 되고 매 회 방문시마다 결과를 평가 웹사이트에 공지한다. 이러한 방문은 보육서비스의 품질이 3등급 이상이라고 판단될 때까지 지속되고 이때에 재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공지한다. [그림 2]는 2005~2008년 영국 보육서비스의 성과영역별 평가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영국 보육서비스의 5대 성과영역별 평가결과 (2005. 4~2008. 3)



자료: OfSTED, 2008. "Leading to Excellence"

3) 성과 및 품질 향상 위한 노력

영국 정부는 2007년 12월, 세계에서 아동이 성장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 성과 및 품질 향상을 위해서 영유아보육 품질향상 프로그램(The Early Year Quality Improvement Programme)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한 주요 영역으로 ① 의사소통의 질(Communicating quality), ② 성과 관리(Performance Management-driving quality improvement through the system), ③ 인력 개선(Supporting the workforce rise to the quality challenge)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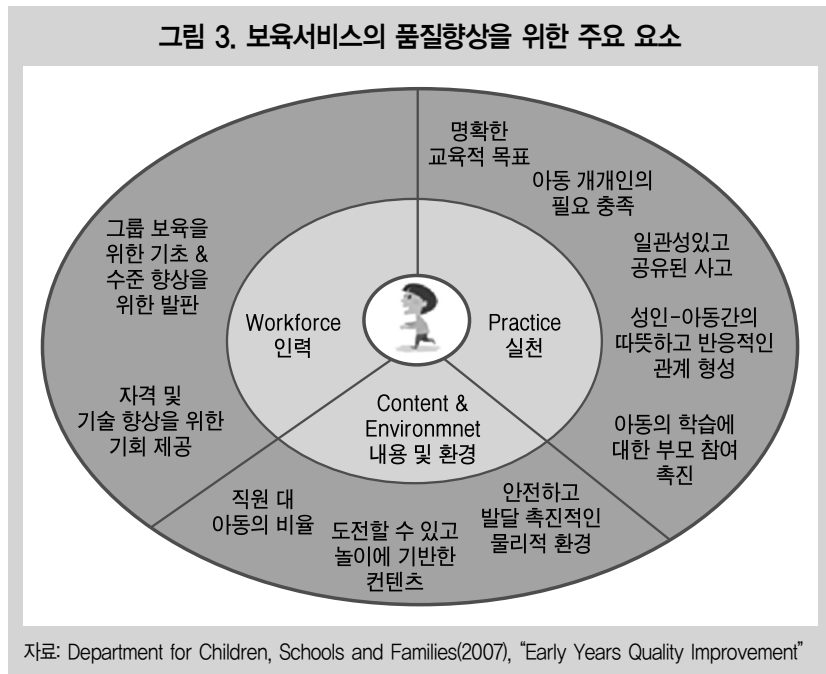
(1) 의사소통의 질(Communicating quality)

영국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무엇보다도 보육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높은 보육서비스의 질(quality)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현재, 연구된 분명한 결과들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해 서비스 공급자와 학부모 간의 인식은 상이하고, 학부모들의 경우, 보육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추천, 거리 등의 편의성으로 보육서비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같은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성과 향상 및 이를 위한 비전과 방식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림 3]과 같은 주요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 시스템을 통한 품질 향상 및 성과 관리 (Performance Management-driving quality improvement through the system)

그림 3. 보육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한 주요 요소



자료: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7), "Early Years Quality Improvement"

영유아를 위한 국가 전략(Early Year National Strategies)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있어서 품질 향상 노력이 간명하고 일관성 있게 제공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보육 관련 자문인력에게는 품질 향상을 위한 수단과 과정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담당자들에게는 지속적인 품질 향상에 필요한 새로운 관리 및 리더십 기술에 대한 훈련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지방정부는 아동의 성과 향상을 위한 통합적 전략을 개발하고 아동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품질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학부모들에게도 품질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질 좋은 보육서비스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하며, 나아가 지속적인 품질향상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명확히 해야 함을 밝혔다.

이외에도 영유아기 기본 단계(EYFS) 기준을 충족시키고, OfSTED의 자기평가 방식을 활용하며, 영유아에게 있어서 효과적인 교육의 성격과 문화적 배경 모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제공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ECERS), Key Elements of Effective Practice(PNS), Babies' Effective Early Learning(BEEL) 등의 품질향상을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3) 인력 개선(Supporting the workforce rise to the quality challenge)

인력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이상 학력의 인력을 모집하고 보유하며, 모든 인력에게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학교와 영유아 보육 인력 간의 상호 지지와 공유된 목표를 교류해야 하며, 리더십 스킬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데, 영국정부는 현재 the Graduate Leader Fund를 통해 민간·비영리(PVI)영역에서 고학력 인력을 채용·확보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 인력과 학교 간의 장벽을 허물고 지식과 실천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5. 결론

영국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취학 후 학업 성취에까지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고 양질의 보육 환경 제공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보육 환경의 질에는 인력의 질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고학력 인력 확충 및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국가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감독하여 이용자들이 그 결과를 열람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서비스 이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

였다. 특히 영국은 보육서비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유기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아젠다를 설정하여, 국가전략으로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바우처 방식에서의 보육재정 지원 전환과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영국의 보육서비스 성과 관리체계 내용은 보육서비스 성과 체계를 설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육서비스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에 대한 정책기조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서비스의 국가 표준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보육 정책의 정책기조와 서비스의 구체적 표준 지침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준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설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거시적

인 차원에서 보육 정책 전반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국가 아젠다로서 모든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의 유기적이고도 총체적인 성과목표를 마련하여 모든 아동 관련서비스와 정책을 포괄하는 거시적인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 서비스 역시 이를 안에서 관리되고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아동에 대한 국가적 성과 목표 설정과 함께 보육서비스의 성과 목표 또한 거시적 목표 안에서 다른 정책과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궁극적인 성과 목표 설정과 함께 이에 대한 하위 목표로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의 성과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성과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비전 공유를 비롯하여, 보육서비스 인력에 대한 투자 및 전문 인력 확충, 영유아 보육서비스 인력과 학교 교육서비스 인력 간의 교류 등과 같은 영국의 구체적인 제도적 노력 역시 현재 국내의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문**